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6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서동용・홍정민・고영인

양정숙 · 안민석 · 인재근

안규백 • 윤영덕 • 박홍근

신정훈 • 양이원영 • 이상직

허 영 · 윤재갑 · 유정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근거가 부족 하다는 지적이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원격수업 등 다양한 학교 수업운영 방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원격수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법 적용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이거나 확대 예정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신설되는 조 항은 수업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기존의 조항을 '방법'을 제외한 '시간' 기준에 따른 종류로 한정하도록 정비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 2.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업 등) ① (생 략)	제24조(수업 등) ① (현행과 같
	<u></u> 이 교
② 수업은 주간(晝間) • 전일제	2
(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 · 계절수업	
·시간제수업 <u>또는 방송·통신</u>	<u>_</u>
<u>수업 등</u> 을 할 수 있다.	
<u> <신 설></u>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나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
	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2.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
	<u> 동</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